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0. 4. 9.>

(앞 쪽)

제 호 명예습지생태 안내인증	사진 (2.5cm×3cm)
성 명 : 생년월일: 유효기간:	
위 사람은 「습지보전법」 제22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	[인]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뒤 쪽)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습지보전법에 의한 안내 및 지도업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